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 규정

제정 1989. 8. 23.

개정 1993. 4. 30.

개정 2010. 3. 11.

개정 2019. 8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기획전략본부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대학 장기 발전에 관한 종합 전략의 수립
2. 캠퍼스, 시설 등 확충 및 조정에 관한 기획
3. 대외 협력, 국제 교류, 홍보에 관한 업무
4. 발전기금 및 연구재단 등 관련 업무
5.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기획전략본부에 기획전략본부장 및 서울대학교 법인 직원 등의 근무자를 둔다.

② 기획전략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기획전략본부에 기획·조정팀, 대외협력·홍보팀을 두며, 각 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획·조정팀: 발전계획 수립, 공간의 확충 및 조정, 미래 농업 관련 업무 지원
2. 대외협력·홍보팀: 대외 협력, 국제 교류, 홍보, 발전기금 등 업무

제4조(운영세칙) 기획전략본부장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기획전략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89호)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131호)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